
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3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위 위원장

제안이유

- 부천시지명위원회 구성에 부천시의회의원을 포함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주요골자

○ 부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

: 7명 → 10명 (안 제2조제1항)

○ 부천시지명위원회 구성에 “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”삽입

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7인 이내”를 “10인 이내”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부천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 <p>1. <u>관계직원</u></p> <p>2.~3.(생략)</p> <p>④~⑤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.....</p> <p>.....<u>10인</u> 이내</p> <p>....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부천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</u></p> <p>2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